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전수일 의원)

의안 번호	242
----------	-----

발의연월일: 2020년 05월 01일

발 의 자: 전수일 의원

찬 성 자: 이명순, 심현정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나. 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자 (안 제3~4조)

다.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선정 (안 제5조)

라.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안 제6~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0. 04. 10. ~ 2020. 04. 30.(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령 : 2020. 04. 02. ~ 2020. 04. 09., 아래표 참조

조례안	제출 의견(농업축산과)	의회 의견
<p>제3조(지원사업)</p> <p>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p> <p>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p> <p>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p>	<p>제3조(지원사업)</p> <p>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p> <p>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p> <p>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불수용】</p> <p>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u>지원</u></p> <p><u>사업 선택</u> 모두 군수가 정하기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p>
<p>제8조(사후관리 등)</p> <p>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u>실적보고</u>를 받을 수 있다.</p>	<p>제8조(사후관리 등)</p> <p>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u>보고</u>를 받을 수 있다.</p> <p>→이유</p> <p>추진실적, 정산검토 등 사후관리를 위해 포괄적 의미의 “보고” 로 변경</p>	<p><u>실적보고를 보고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u> 군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고가 무엇을 보고받는지 알 수 없으며</p> <p>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제9조에서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였고 그 외 사후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보고는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p>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

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성 명		민박명				
	주 소						
2. 사업계획	사업장소				대지면적	m ²	
	건축물규모	<input type="checkbox"/> 1층 <input type="checkbox"/> 2층 <input type="checkbox"/> 지하					
	공사규모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주택연면적	m ²	전체방수 (면적)	개 (m ²)	객실수 (면적)	개 (m ²)	
	건축자재	외 벽	<input type="checkbox"/> 조적 <input type="checkbox"/> 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철골구조				
		지 붕	<input type="checkbox"/> 평지붕 <input type="checkbox"/> 경사지붕				
기 타							
3. 설계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영 <input type="checkbox"/> 설계사무소						
4. 시공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영 <input type="checkbox"/> 전문건설업체(자)						
5. 사업 추진일정	허가·신고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6. 투자 계획서	사 업 별		소요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합 계						
	공사비	재료비					
		인건비					
	설 계 비 (전액 자부담)						
기 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

1. 숙박시설 소개

객실	온돌방 : 평형 실, 침대방 : 평형 실
내부시설	냉장고, TV, 서랍장, 에어컨, 화장실, 빨래걸이 등
취사시설	싱크대,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기타 취사도구 등
기타시설	
주차장	

2. 운영계획

- 예약 시, 이용 전 온라인 계좌로 숙박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
- 입실은 () 시 이후부터, 퇴실은 ()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퇴실 시 키를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요금 안내

이용시기	가격	비고
주중(일 ~ 목)	원	인 실기준 등
주말(금, 토)	원	
성수기 및 연휴	원	

4. 환불안내

-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준수

5. 주변여행지 소개

○

6. 예약문의

- 전화 :
- 휴대폰 :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시행일 : 2020. 5. 12.] 제86조제2항제4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전수일 의원
연락처	(033) 330 -2506